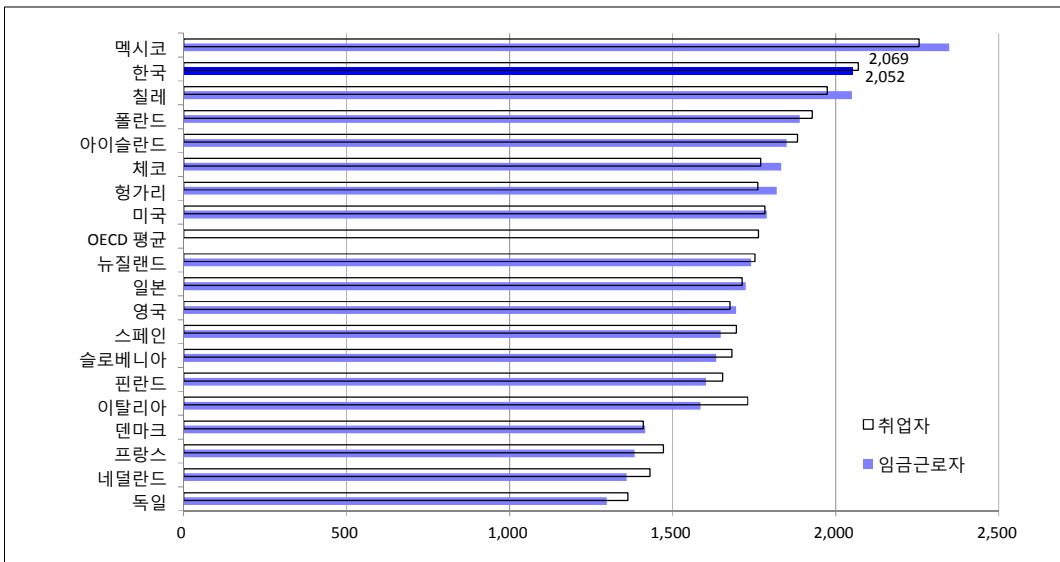


장시간 근로 현황¹⁾

-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 취업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763시간이며, 한국은 OECD 평균보다 306시간 더 긴 2,069시간으로 멕시코, 그리스와 함께 근로시간이 긴 최상위 국가에 속함.
 - OECD 회원국의 임금근로자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대부분 2,000시간 미만이며 독일(1,298시간), 네덜란드(1,359시간), 프랑스(1,383시간), 덴마크(1,416시간) 등은 연간 1,500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짧음.

[그림 1] OECD 회원국의 취업자·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2016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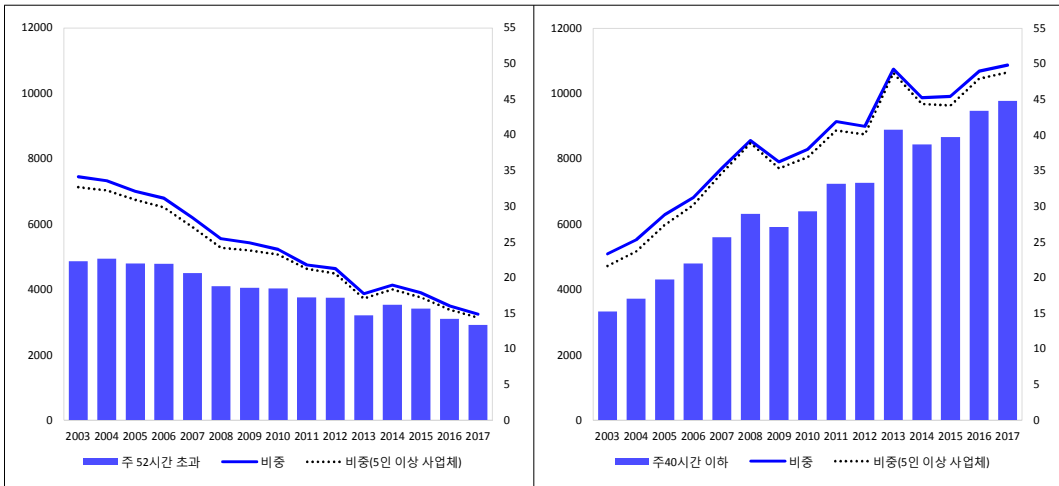
주 : 한국의 취업자·임금근로자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거한 수치임.
 자료 : OECD, <http://stats.oecd.org>(2018.5.28.기준).

1) 본고에서 장시간 근로는 주52시간 초과근로를 의미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17년 기준 42.4시간(총 실제 취업시간=주된 일(42.2시간)+다른 일(0.2시간))임.²⁾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친 근로기준법 개정(1989년, 2003년)으로 ‘주48시간→44시간’으로, 다시 ‘주44시간→주40시간’으로 바뀌고, 적용범위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됨.
 - 2011년 7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004년 48.7시간에서 2017년 42.4시간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2,000시간이 넘어 장시간 근로가 산업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주된 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주40시간 이하 임금근로자 비중은 49.9%(9,779천 명)이며,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14.9%로 2,915천 명에 달함. 이 중 주68시간 이상 근로자도 399천 명에 이룸.

[그림 2]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자수와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



주 : 1)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2017년 일시휴직자는 317천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6%를 차지함.
 2) 장시간 근로자는 주된 일 기준으로 주당 실제 취업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임금근로자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장시간 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업(29.4%)이었으며, 주당 평균근로시간도 47.6시

2)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년 8월)에 의하면 임금근로자(일시휴직자 제외)의 주된 일 기준 '평균' 1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근로는 10.0%인 1,954천 명이며, 주68시간 초과근로자는 283천 명으로 나타남.

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임.
- 한편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부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미만이며, 연간 근로시간은 1,900시간대로 상대적으로 짧음.

〈표 1〉 산업별 주52시간 초과 임금근로자수·비중·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천 명, %, 시간)

	주52시간 초과 근로자수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			주당 평균근로시간		
	2004	2012	2017	2004	2012	2017	2004	2012	2017
전 체	4,939	3,743	2,915	33.6	21.2	14.9	48.5	44.3	42.2
제조업	1,333	947	685	37.9	26.6	17.4	50.1	47.5	45.3
건설업	425	256	201	31.5	19.2	13.1	46.4	43.7	42.0
도소매업	787	538	408	41.8	25.2	17.8	49.6	44.6	43.0
운수업	325	268	229	52.4	36.4	29.4	54.6	49.6	47.6
음식숙박업	564	422	399	52.4	37.9	28.5	52.4	45.5	41.9
출판 영상 등	152	88	64	27.8	13.6	9.2	48.3	44.3	42.9
금융보험업	95	82	51	13.9	10.2	7.0	44.8	43.3	42.6
부동산업 임대업	102	81	81	38.2	25.3	19.7	51.7	46.4	44.1
전문과학기술	108	111	71	22.2	12.6	7.7	47.1	44.2	42.7
사업시설 등	250	261	216	40.0	24.5	17.9	52.1	46.0	43.7
공공행정	154	120	102	20.2	12.9	9.9	45.8	40.5	39.4
교육서비스업	102	74	69	8.8	5.6	4.7	40.0	37.5	36.7
보건, 사회복지업	139	142	110	25.6	10.8	6.1	48.7	41.4	37.8
예술, 스포츠 여가	68	48	29	38.5	19.5	10.7	48.9	40.5	37.6
협회,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46	218	151	42.4	29.9	20.0	50.6	46.2	42.2

주 : 1) 일시휴직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된 일 기준으로 계산함.

2) 연간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근로시간*30.4/7*12' 산식으로 계산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5개 특례업종 제외)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근로시간이 긴 한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산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임.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필두로 2020년 1월 1일 50~299인, 2021년 7월 1일 5~49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52시

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운수업(노선버스업 제외)은 보건업과 더불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특례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으로 유지됨.

○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규모는 최대 15천 개(주52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 20천 개) 정도로 추계됨.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7년)」에 의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는 990천 명으로 분석대상 근로자의 9.1%에 달함. 2021년 근로시간 단축을 5인 이상 사업체(5개 특례업종 제외)까지 확대 적용할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신규일자리는 최대 132천 개(주52시간 기준, 주40시간 기준은 171천 개) 정도로 추계됨.

〈표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효과

(단위: 천명, %, 천 시간, 시간, 천 개)

		전체 근로자	주52시간 초과				고용효과	
			근로자수	주52시간 초과한 근로시간 합계	주당 근로시간 평균	초과 노동시간 평균	주52시간	주40시간
전체		10,845	990 (9.1)	6,847	58.9	6.9	131.7	171.2
단계적 적용	300인 이상	1,865	117 (6.3)	799	58.8	6.8	15.4	20.0
	30~299인	4,041	510 (12.6)	3,575	59.0	7.0	68.8	89.4
	5~29인	4,939	362 (7.3)	2,472	58.8	6.8	47.5	61.8
산업 직종	제조업	3,207	551 (17.2)	3,999	59.3	7.3	76.9	100.0
	운수업	522	65 (12.4)	520	60.1	8.1	10.0	13.0
	음식숙박업	382	64 (16.8)	450	59.0	7.0	8.6	1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90	65 (22.4)	513	59.9	7.9	9.9	12.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852	440 (23.7)	3,340	59.6	7.6	64.2	83.5

주 : 1)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사업체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음.

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기준 월 소정실근로시간과 월 초과실근로시간을 조사하며, 본고에서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월 소정실근로시간+월 초과실근로시간)*7/30.4' 산식으로 계산함.

3) 고용효과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현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채용가능한 일자리 수를 의미함.

4) () 안은 특별별 주52시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 비중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2017년).

- 특히 장시간 근로 관행이 만연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에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만큼 신규 채용한다면 77천 개(주52시간 기준) 창출될 것이며,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함. 또한 제조업과 관련 있는 직종인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64천 개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본고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7년)」 원자료를 5인 미만 사업체, 5개 특례업종 등을 제외하여 분석하였으며, 특례업종을 반영하는 데 있어 산업분류정보가 제한적이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재직자 임금보전 등 지원을 확대할 것임.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와 5개 특례업종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의 정착을 위해 당장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현장과의 소통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KL**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